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. 12. 6 선고 2024가단5891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1. 22.

판 결 선 고 2024. 12. 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1 기재 부동산 지하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ㄺ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
부분 31㎡를 인도하고,

나. 3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10. 1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
지급하고,

다. 2024. 9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
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 양우석

별지